개정: 2015. 08. 12.

기본거래협약서

20 . .

갑 : 주식회사 오트로닉

을 :

기본거래협약서

주식회사 오트로닉을 "갑"이라 칭하며, 를 "을"이라 칭하고 "갑"은 제품생산에 사용할 부품을 **"을"로부터 구매하고 "을"은 동부품을 "갑"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사항을 협약한다.**

제 1조 기본협약

1. 본 협약서는 "갑" "을" 간의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별도의 협약이 없는 한 본 협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2. "갑" "을"간의 거래에 있어서 별도의 협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별도의 협약에서 언급되지 않은 거래상의 기본적인 사항은 본 협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3. 본 협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약이 없는 한 "갑" 과 "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조 거래의 성립

"갑"과 "을"간의 개별거래는 "갑"이 발급한 "갑" 소정양식의 물품주문서 또는 개발의뢰문서가 "을"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3조 업체등록 및 출입

1. "을"은 이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 "갑"의 소정 양식의 업체현황카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기부등본, 출입자 인적사항,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업체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을"은 변경사항 발생 10일 이내에 문서로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전항에 의한 "을"의 업체 등록시 출입자로서 등록된 자만이 "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을"의 출입자는 "을"을 대리하여 본 협약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을"은 그 출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갑" 또는 제3자에 대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4조 부품개발

1. "을"은 "갑"으로부터 부품개발 검토를 의뢰 받은 때에는 견적서 및 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갑"은 이를 검토하여 "을"에게 "갑"의소정양식에 의해 개발을 요청한다. "을"은 "갑"에게 세부 부품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을"에게 "을"이 제출한 문서를 보완 또는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락 불가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2. "갑"이 "을"에게 개발요청한 부품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기술자료의 제공과 기술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갑"은 "을"에게 개발진척상황을 수시로 통보요구, 방문확인 및 방문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5조 견본품 제출

"을"은 "갑"에게 제출한 세부부품개발계획서에 따라 부품개발을 완료하여 "갑"의 모든 요구사항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면 견본품, 견본품성적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조 기술자료

1. 기술자료의 대여

"갑"은 "을"에 대한 부품발주시 가능한한 "을"이 그 수주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술자료(도면, 규격, 시험방법, 한도견본)를 대여한다.

2. 기술자료의 준수

"을"은 "갑"이 요구한 수주부품의 규격을 "갑"의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부품을 제작할 수 없다.

3. 기술자료의 확인 및 해석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기술자료를 확인, 검토, 숙지 후 수주부품을 제작하여야 하며, 만일 기술자료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갑"에게 즉시 통지하여 "갑"의 해석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4. 기술자료의 관리

가.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를 관리함에 있어,

1) 보관 책임자로서의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타인에게 공개,전용 및 제공하거나 임의로 처분 할 수 없다.
2) "갑"으로부터 수주받은 부품의 제작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 외 사용, 복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장기간 상용으로 훼손되어 판독이 어려운 경우 문서로써 "갑"에게 재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갑"이 기술자료를 제대여하는 경우 "을"은 훼손된 기술자료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을"의 대표자(또는 법정대리인)는 전술한 사항에 동의하면 기술자료 사용에 대한 "갑"의 소정양식에 서명 후, 그 원본을 "갑"에게 제출하고 사본을 "을"이 보관한다.

5. 기술자료의 반환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기술자료의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6. 기술자료의 제시

"을"이 자체사양에 의하거나 혹은 "갑"에게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외 업체로부터 입수한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갑"은 사양승인과 품질승인을 위하여 관련 기술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7조 가격의 결정

1. "갑"과 "을"은 "갑"이 견본품 품질승인한 부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원가계산을 하여 양산개념과 국제 경쟁력에 상응하는 가격을 중심으로 상호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2. "을"은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원가를 확보하기 위해 "을"이 제조하는 부품의 생산성향상과 원가절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갑"은 "을"의 동의하에 가격 산정시 원가절감 목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후 이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3. 원자재가격, 환율, 생산성 등의 변동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부품의 원가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본 조에 의하여 결정 또는 조정된 단가는 최소 6개월간은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을"은 전항에 의한 부품의 원가계산, 가격결정, 가격조정을 위해 상호 합당한 원가를 계산할 수 있도록 선의의 거래자로서 양심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 "갑"과 "을"은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상호의견이 현저히 상이하여 해당부품의 거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부품을 이원화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거래중단을 통지할 수 있다. 이때 "을"은 "갑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6개월간 납품해야 한다.
6. "갑"과 "을"의 거래에 있어서 가격결정 합의가 지연될 때에는 "을"은 "갑"이 정한 임시단가를 사용하여 납품하며, 확정단가와 임시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가 결정된 후 정산한다.

제 8조 납품

1. 납기결정

"갑"은 "을"이 수주부품 제조납품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의 예상물량을 "을"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한 납기일 이전에 납기가 기재된 물품주문서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사정에 따라 통보일로 부터 납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을"은 수주부품 제작능력의 제한 및 기타 합리적인 이유로 주문서에 기재된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문서를 받은 즉시 "갑"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 "을"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새로운 납기를 결정할 수 있다.

2. 세부 납기통지

가. 1항의 납기 내에서 "갑"은 필요시 납기가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하여, "을"은 이에 준하여 납품한다.

나. "갑"은 "갑"의 거래선으로부터 수주량의 변동에 의해 "을"에게 납기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갑"은 변경사항을 통지하고, "을"은 수시로 이를 확인하여 응하여야 한다.

3. 납기준수

"을"은 상기 1,2항에서 결정된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약 할 경우 "을"은 별도의 협정에 의거 결정한 바 없는 한 연체일수 1일에 대하여 주문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금과 "갑"의 생산라인 중단 시 "갑"이 산정한 기준에 따른 "갑"의 손실 비용과 "갑"이 제3자에게 행한 배상금을 보상할 책임을진다.

4. 납품절차

"을"은 "갑"의 소정의 납품절차에 따라 부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5. 납품장소

"을"은 물품주문서 또는 개발의뢰문서에 기재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및 제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6. 납품의 보장

"갑"은 "을"이 가격, 품질, 납기준수 및 기타협력에 대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을"의 계속적인 납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9조 검사

1. 검사방법

"갑"의 검사기준은 "갑"이 제시한 사양서 도면 및 규격에 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은 물품주문서 또는 개발의뢰문서에 당해 거래에 적용될 별도의 검사기준이 기재된 문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위 별도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검사시기

"갑"은 납품 후 7일 내에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거래명세표(검사결과통보서)또는 검수판정으로 통보한다. 단, 그 기간을 초과하는 특정시험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갑"은 2항의 검사에 따라 발생한 불합격품에 대해 하자의 정도 및 부품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수정제작, 용도제한, 폐기 등 의 지시를 할 수 있다. "을"은 "갑"의 별도지시가 없는 경우, 통지받은 후 3일 이내에 해당 불합격부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4. 재납품

"을"은 제2항에 의하여 검사불합격 사실을 통지받은 후 지체없이 당해 수주부품을 제작하여 재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된 부품에 관하여는 당초 납품된 부품과 동일한 검사절차가 반복된다.

다만, "갑"이 제2항에 의한 검사불합격 사실을 고지와 동시에 재납품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을"은 재납품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 위 의사표시일 다음날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손해 배상금이 면제된다.

제10조 재무확정 및 대금지급

1. "을"이 납품한 부품이 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때에는 "을"은 납품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되며 "갑"의 "을"에 대한 채무가 확정된다.
2. "을"이 납품한 부품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은 업종의 특수성, 경제여건, LOCAL L/C, 기타사정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 금형, 지그, 픽쳐

1. "갑"이 "을"에게 대여하거나 혹은 그의 비용을 지급한 금형, 지그(JIG), 픽쳐(FIXTURE)는 "갑"의 재산권에 속하며, "을"은 위 금형, 지그, 휙스쳐에 대해 선의의 보관자로서 "갑" 소정의 금형보관증에 규정된 내용대로 보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품질보증

1. "을"은 "갑"으로부터 수주받은 부품에 대한 일관된 품질보증체계를 확립하여 또는 "갑"의 보증체계를 이용하여 제작공정 중 또는 완료 후 "갑"이 요구하는 제반 물성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보증하여야 한다.
2. "을"은 품질계획의 수립, 측정체계의 유지, 운영, 수주부품에 대한 통계적 공정관리, 검사 및 시험결과의 보관 등 "갑"의 협력업체 품질관리지침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의 수주부품 제작에 있어서 "갑"의사전승인 없이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수주부품의 품질 및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제조 공정 및 제조설비의 변경
 나. 금형의 수정 또는 재제작.
 다. 재료의 변경 또는 재료의 제조원 변경
4. "갑"은 "을"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을 위하여 수시로 품질보증체계 확립. 시설근대화, 생산공정의 개선 및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지도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하자보상

"을"이 "갑"에게 납품한 부품이 제10조에 의한 채무확정 시점이후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하자가 발생 또는 발견된 경우, "갑"과 "을"이 별도로 채결하는 크레임보상협약서에 따라 "을"은 "갑"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제14조 실사 및 지도

"갑"은 수주한 부품에 관하여 "을"의 공장설비, 생산관리, 품질보증 및 재무상태 등의 실태를 수시 조사하여 지도, 조언할 수 있으며, 수시로 작업현장에 출장하여 이를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으며 이들에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업체평가

"갑"은 "을"과의 거래관계에 있어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업체평가제도 혹은 "갑"의 소정평가 기준에 의해 "을"을 평가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다.

이때 "갑"은 "을"에게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히 평가하여야 하며 "을"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기밀보장

1. "갑"과 "을"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알게된 기술자료, 공업소유권, KNOW-HOW, 그 외 관계되는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을"은 "갑"이 제공한 기술자료를 보관, 관리하던 고의 혹은 과실로 위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됨으로서 "갑"이 LICENSE 제공자측에 행한 배상과 이와 관련된 처리비용 일체 및 기타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 "을"은 본 계약의 이행전후 및 이행중에 발생하는 모든 보안사항을 절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할시 전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7조 공업소유권

1. "을"은 "갑"의 수주부품 제작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노우하우(KNOW-HOW)를 "갑"의 수주부품 제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을"은 문서에 의한 "갑"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를 근거로 공업소유권을 획득할 수 없다.
3. "을"은 이 계약기간 중 또는 그 후라도 "갑"과의 공동연구, 지도 및 아이디어 제공에 의거 공업소유권을 획득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이의 허락을 얻도록 하며 이를 취득할 경우 "갑"에게 무상으로 그의 통상 실시권을 허락한다.

제18조 공업소유권의 침해

1. "을"은 "갑"의 수주부품을 제작 공급함에 있어 부품 및 부품제작 방법이 제3자의 공업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 확약한다.
2. "을"은 수주부품에 대하여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의 공업소유권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을"의 비용으로서 그 일체를 처리하며 만일 "갑"이 이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판매금지

"을"은 "갑"이 제공한 기술자료, KNOW-HOW 및 기술지식을 이용하여 제작한 부품, 유사품 및 그 불합격품을 "갑"의 동의 없이 판매함으로서 "갑"에게 입힌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부품의 식별표시 및 포장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부품의 식별표시 및 포장상태는 다음과 같다.

1. 부품의 포장상태는 "갑"의 요구에 따른다.
2. 부품 및 포장에는 모델명, 부품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납품 년,월,일, LOT번호를 표시하거나 또는 명기된 표찰을 별도 인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의 상표 및 공업소유권 등록사항을 부품에 표시하여야 하며, 규격 및 위치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갑"의 요구가 있을 시 "을"은 유 무상으로 공급된 포장용기 및 "갑"과 협의하여 "을"이 제작한 포장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갑"으로부터 공급된 포장용기는 타용도로 사용될 수 업다.

제21조 외주의 이용

1. "을"은 "갑"이 발주한 부품에 대하여 그 구성품 혹은 공정중 일부를 외주할 경우 혹은 외주업체를 변경할 경우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상기 외주의 경우, "갑"은 직접 혹은 "을"을 통해서 외주업체의 실사 및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실사 및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외주업체에 대해 "갑"이 자료를 요청한 경우, "을"은 제반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3. "을"은 외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22조 사급

1.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재료, 부품, 반제품, 제품 등을 유상 혹은 무상으로 "을"에게 사급 할 수 있다.
2. 사급자재는 대금지급 유,무에 따라 유상사급품 혹은 무상사급품으로 구분되며, 대금결재후의 유상사급품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대금완납전의 유상사급품 및 무상사급품의 소유권은 "갑"에 있다.
 단, 대금결재후의 유상사급품의 소유권이 "을"에게 있더라도 "을"은 "갑"이 발주한 물품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타용도 사용시 반드시 "갑"의 승인을 득다.
 만약 "갑"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타용도로 사용하므로서 발생하는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을"이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사급의 일시, 장소, 대금결재방법 등은 "갑", "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을"은 "갑"의 사급자재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히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고 사급자재의 하자 및 수량과부족이 있을 시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갑"과 협의 처리한다.
 "갑"이 사급자재의 공급업자를 통해 "을"에게 직접 납품시킬 경우에도 동일하다.
5. "을"이 사급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갑"에게 하자를 통보치 않는 경우, 사급자재는 정상 검수된 것으로 한다.
6. 무상사급자재의 남은 자재 및 스크랩 등에 대해 서는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을"은 "갑"의 사급자재에 대해 관리 및 가공과정에서 불량을 일으킨 경우, 신속히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을"은 사급자재에 기인하여 수주부품에 불량을 일으킨 경우 신속히 "갑"에 통지하여 그 대책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사급자재의 재고보유현황을 "갑"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갑"에게 통보하여 결품 및 과잉재고 발생을 방지하는 데 협조 할 의무를 진다.
10.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사급자재수급약정서에 따른다.

제23조 권리의 양도

1.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 협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4조 협약의 해지

1.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을"에 의한 본 협약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였을 경우
 다. 상대방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의 취소 또는 정지분을 받은 경우
 라. 상대방에 관하여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

여 본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수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그 착수를 지연하여 약정기간내의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3개월간 평균 월1회이상 "갑"의 공정결품이 발생한 경우

다. "을:이 납품한 부품의 수입검사 또는 공정검사 불량발생율이 3개월간 평균 1%이상 발생하고 개선의 의사가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라. "을"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본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3. 본 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 대해 거래정지 혹은 본 협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사전 서면 통보하여 상대방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일정기간 동안 납품하여야 한다.

4. 본 협약의 해지는 해지의 효력발생시기 이전에 성립된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본 협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의 권리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조 분쟁의 해결

1. "갑"과 "을"은 본 계약 또는 부수협정 및 기타문서의 해석에 상관습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한다.

2.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분쟁은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제26조 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보부터 만1년으로 하며 협의만료 2개월전까지 협약 당사자 일방의 사전서면 해약통지가 타방에 도달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본 협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고 "갑","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갑)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공단로 94

회 사 명 : 주식회사 오트로닉

대표이사 : 고 진 호 (인)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